

온라인 교과목 운영 규정

제정 2019. 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온라인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 교과목 강의의 질적 향상과 교과과정의 다양성 증진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 교과목의 정의) 온라인 교과목은 본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수업 과정의 일정 분량 이상을 본 대학이 제공하는 특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강의 콘텐츠와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을 의미하며, 그 분량은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온라인 교과목의 구성) ① 온라인 교과목의 수업 일수는 오프라인 교과목에 준하여 적용하고,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수방법과 교과목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어렵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정규 교과목의 경우, 9주 이상, 학습목표(개요), 강의 콘텐츠, 학습 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강의 콘텐츠를 포함한 수업 관련 활동은 교과목 특성을 고려한 교수설계 방향에 따라 담당 교수와 교육혁신센터가 협의하여 개발한다.

④ 학점당 이수 시간은 강의 콘텐츠, 학습 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수업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1학점당 매주 50분 이상으로 하며, 이 중 강의 콘텐츠는 순수 러닝타임이 평균 25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온라인 교과목 개발) ①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심의 및 신청과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 수요, 운영계획서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 온라인 교과목 적합성, 교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교과목 담당 교수는 본 대학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을 시 비전임교원도 온라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④ 온라인 교과목 담당교수는 질적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동일한 내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⑤ 개발 승인된 온라인 교과목은 교육혁신센터에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며, 원격 수

업 콘텐츠의 질 관리 및 운영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교육혁신센터 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5조(온라인 교과목 개설) ① 온라인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심의 및 신청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개설한다.

② 온라인 교과목은 매 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3학점까지 온라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으며,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된다.

제6조(온라인 교과목 학사운영) ①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운영은 학칙 및 학사지침에 규정된 오프라인 교과목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온라인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본 대학(원) 소속 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온라인 교과목의 강의평가는 교과목 강의유형에 적합한 차별화된 평가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오프라인 교과목 기준에 준하여 수업조교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온라인 교과목 지식재산권) ① 대학이 개발비를 지불하여 제작된 강의 콘텐츠 등 저작물의 저작권은 대학에 있다.

② 대학이 저작권을 가진 강의 콘텐츠 등 저작물에 대하여, 대학은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개발교수가 대학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등 저작물을 교내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④ 강의 콘텐츠 등 저작물 제작 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학사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제정, 시행 한다.